



일본의 특정가정용 기기 재상품화법(Ⅲ)

지난 특정가정용 기기 재상품화법(I)에서는 제1장 총칙(제1~2조), 제2장 기본방침 등(제3~8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가정용 기기 재상품화법(II)에서는 제3장 소매업자의 수집 및 운반(제9~16조), 제4장 제조업자 등의 재상품화 등의 실시(제17~31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번 특정가정용 기기 재상품화법(III)에서는 제5장 지정법인(제32~42조), 제6장 잡칙(제43~57조), 제7장 벌칙(제58~62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5장 지정 법인

1. 지정 등

(제32조)

- ① 주무 대신은 민법(명치 제29년 법률 제89호)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며, 다음 조에 규정하는 업무(이하 「재상품

화 등 업무」라고 함)를 적정하고 확실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그 신청에 의하여 재상품화 등 업무를 실시하는 자(이하 「지정 법인」이라 함)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주무 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정을 받은 자의 명칭, 주소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③ 지정 법인은, 그 명칭 및 주소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그 취지를 주무 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주무 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었을 때는, 해당 신고와 관련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동조의 입법 취지는 제조 또는 수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특정 제조업자의 위탁을 받은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재상품화를 실시하거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존재 하는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재상품화를 실시하는 등 동 법률의 구조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지정 법인을 주무 대신의 지정에 의하여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¹⁾ 동조에서 규정하는 민법 제34조에 의한 법인(지정 법인)이란 이른바 재단 법인이나 사단법인인 공익 법인을 말한다. 이러한 공익 법인 가운데, 제33조에 기재된 재상품화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확실히 할 수 있는 조직·인원·체제 등을 갖추고 있는 법인 중에서 주무 대신이 지정한다.

2. 업무

(제33조)

지정 법인은 다음에 기재한 업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제조업자 등, 그 제조 등과 관련되는 특정 가정용 기기의 양이 주무 성령 그리고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정 제조업자등」이라고 함)의 위탁을 받아, 해당 특정 제조업자 등이 재상품화 등을 해야 할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재상품

화 등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인수하여야 할 제조업자 등이 존재하지 않고 해당 제조업자 등을 확지할 수가 없는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재상품화 등에 필요한 행위

3. 시정촌(市町村) 장의 신청을 받아, 주무 대신이 제조업자 등에게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인도에 지장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서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취지를 공시한 지역을 그 구역으로 하는 시정촌 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지역과 관련되는 시정촌에서 수집한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 또는 해당 주민이 배출하는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을 재상품화 등을 해야 할 자에게 인도하는 것

4. 특정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재상품화 등의 실시에 관한 조사 및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적정한 배출·수집·운반·재상품화 등의 실시의 확보에 관한 보급·계발을 행하는 것

5. 특정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수집·운반·재상품화 등의 실시에 관계되어 배출자, 시정촌의 조화에 응하여 이를 처리하는 것

*** -----

1) 「특정가정용 기기 재상품화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 법인의 지정 구분)에 의하면 제32조 제1항의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구분은 특정가정용 기기 폐기물 등의 구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함으로써 지정 법인의 신청 구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즉 지정 법인은 특정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구분(에어콘, 텔레비전, 냉장고 및 세탁기의 구분)마다 지정을 받게 된다.

동조의 입법 취지는 지정 법인이 실시하는 업무의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1호에 의하면, 특정 제조업자 등의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재생품화 등에 필요한 행위로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재생품화 등에 필요한 행위를 확실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재생품화 등을 위한 시설의 확보가 필요한 것 외에 전국적으로 지정 인수 장소를 확보 할 필요가 있지만, 중소 규모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전국적으로 이러한 시설이나 지정 인수 장소를 확보하는 것은 곤란하고 또 제도의 효율적인 실시에 반하는 경우도 상정된다. 이를 위하여 확실히 이러한 시설 등을 확보하고,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도록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재생품화 등에 필요한 행위의 수탁처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정 법인이 이 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덧붙여 이것은 특정 제조업자 등이 지정 법인 이외의 처리 업무나 다른 제조업자 등에 위탁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제2호에 의하면, 인수하여야 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재생품화 등에 필요한 행위로,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재생품화 등에 필요한 행위는 해당 특정 가정용 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담당하게 된다. 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도산 등에 의해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출자나 소매업자가 폐기물을 인도해야 할 자

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생품화 등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 있는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을 인수하고, 재생품화 등에 필요한 행위를 실시하는 업무를 지정 법인이 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셋째, 제3호에 의하면,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인도가 곤란한 지역에 있어서의 인도로,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지정 법인에의 인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생품화 등이 원활하게 행해지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인도에 지장이 있는 지역에 있어 배출되는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을 인수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에 인도하는 업무를 지정 법인이 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넷째, 제4호는 보급·계발에 관한 규정으로, 동 법률에 의한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재생품화 등의 구조는 종래의 폐기물 처리와 다른 것으로 특히,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적정한 배출과 요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동 법률의 의의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고, 국민 각계각층의 깊은 이해가 중요하다. 지정 법인은 재생품화와 관련되는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관계자와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보급 계발을 지정 법인의 업무로 하고 있다. 다섯째, 제5호는 조회 대응으로, 동 법률에 의한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생품화 등의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 인수 장소의 소재지 등에 관한 시정촌이나



소비자 등의 조회에 응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관계자의 편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지정 법인의 업무로 하고 있다.

3. 요금 등의 공표

(제34조)

- ① 지정 법인은,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 제2호 및 제3호에 기재된 업무에 관한 요금 그 외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이것을 변경하는 때에는 마찬가지로 한다.
- ② 지정 법인은, 특정 가정용 기기를 사용하는 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그 요구에 응하여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정 가정용 기기와 관련하여 제210조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공표된 요금에 대하여 그 자에게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조의 입법 취지는 지정 법인이 청구하는 요금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정 법인이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인수를 정한 배출자에게 청구하는 요금의 설정 등에 관련하여, 준수해야 하는 사전 공표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이다. 지정 법인이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인수에 즈음해 청구하게 되는 인수나 인도 또는 재상품화에 필요한 행위에 관한 요금을 미리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덧붙여 제34조 제2항에서 공표하는 요금은 제33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관한 것으로, 동조 제1호에 기재하는 업무에 관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1항의 요금 공표는 지정 법인에 위탁을 하는 특정 제조업자 등이 이것을 실시하기 때문이다.²⁾

4. 재상품화 등 업무 규정

(제35조)

- ① 지정 법인은 재상품화 등 업무를 행할 때에는 그 개시 전에 재상품화 등 업무의 실시방법, 제33조 제1호의 위탁과 관련된되는 요금(이하 '위탁요금' 이라고 함)의 액을 산출하는 방법 및 동조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 업무에 관한 요금 그 외의

2) 「특정 가정용 기기재상품화법 시행규칙」 제21조((지정 법인의 요금의 공표)에 의하면, 제8조의 규정은 동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에 대하여 준용한다. 구체적인 요금 공표 방법으로는 ① 품목별(에어콘,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② 매일 간행되는 신문(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 신문지)에 의하여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당 요금의 공표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규칙 제8조의 준용). 또한 규칙 제22조에서는 지정 법인이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을 인수하는 장소(지정 법인의 지정 인수 장소에 상당)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특정 가정용 기기재상품화법 시행규칙」 제23조 (지정 법인의 요금의 응답의 방법)에 의하면, 제6조는 지정 법인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조 제13조 제4항인 것은 제34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재상품화 등 업무 규정을 정해 주무 대신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② 주무 대신은 전항의 인가 신청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것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항의 인가를 하여야 한다.
1. 재상품화 등 업무의 실시 방법, 위탁 요금의 액수의 산출 방법 및 제33조 제2호 및 제3호에 기재된 업무에 관한 요금 이 적정하고 명확하게 정하고 있을 것
 2. 지정 법인 및 지정 법인과의 사이에 제33조 제1호의 위탁과 관련되는 계약(이하 「재상품화 등 계약」이라고 함) 또는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재상품화 등에 필요한 행위의 실시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책임 및 위탁 요금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을 것
 3. 특정의 사람에 대해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닐 것
 4. 관련 사업자 및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닐 것
- ③ 주무 대신은 제1항의 인가를 한 재상품화 등 업무 규정이 재상품화 등 업무의 적정하고 확실한 실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상품화 등 업무 규정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동조의 입법 취지는 지정 법인이 재상품화 등의 업무 실시 방법 등에 대해 정한 재상품화 등 업무 규정을 책정해 주무 대신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경우와 달리 지정 법인에 대해서는 인수의무나 재상품화 등 실시의무 등 요금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에 대하여 재상품화 등 업무 규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재상품화 등 업무 규정에 대해서는 재상품화 등의 실시 방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특정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재상품화 등에 필요한 행위를 수탁하는 경우의 위탁 요금의 산출 방법, 제33조 제2호 및 제3호에 기재된 업무에 관한 요금 등을 정하고 있다. 또한 재상품화 등 업무 규정의 내용의 적절성, 공정성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인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정하고 있다. ① 재상품화 등 업무의 실시 방법, 특정 제조업자 등이 지급하는 위탁 요금의 산출 방법이나 소비자에 대해 청구하게 되는 수집 운반이나 재상품화 등에 관한 요금에 대하여 적정하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을 것(제2항 제1호), ② 지정 법인과의 사이에 재상품화 등 계약을 체결하는 특정 제조업자등 및 지정 법인과의 사이에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재상품화 등에 필요한 행위의 실시를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자(실제로 재상품화 등을 실시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사업자)가 책임을 가지고 실시하는 사항과 위탁 요금의 구체적인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정하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을 것(제2항 제2호), ③ 특정한 자(예를



들면, 일부의 특정 제조업자 등)에 대해 위탁 요금의 설정 등에 있어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닐 것(제2항 제3호), ④ 재상품화 의무를 지정 법인에 위탁하는 특정 제조업자 등이나 지정 법인이 행하는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수집·운반이나 재상품화 등을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사업자 등의 관련 사업자 및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닐 것(제2항 제4호)의 네 가지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³⁾

5. 사업 계획 등(제36조)

(제36조)

- ① 지정 법인은 매사업년도, 주무 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상품화 등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주무 대신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② 지정 법인은 주무 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사업년도 종료후 재상품화 등 업무에 관한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주무대신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조의 입법 취지는 지정법인이 매사업년도, 재상품화 등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주무 대신의 인가를 받을 것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서류의 작성을 지정 법인에게 의무지우는 것은 지정 법인이 행하는 재상품화 등 업무의 적정성 및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무대신이 이러한 서류에 의하여 지정 법인의 업무 운영 상황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6. 업무의 휴·폐지(제37조)

(제37조)

지정 법인은 주무 대신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재상품화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또는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조는 지정 법인이 재상품화 등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기 위해서는, 주무대신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정하고 있다. 일단 재상품화 업무를 개시한 지정 법인이 자기의 사정 만으로 당해 업무를 정지하는 것은 본 법률에 기하여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재상품화 등의 실시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정 법인의 재상품화 등 업무의 휴·폐지에 대해

*** -----

3) 「특정가정용 기기 재상품화법 시행규칙」 제24조(재상품화 등 업무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35조 제1항의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에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 즉, ① 재상품화 등 업무의 실시 방법, ② 위탁 요금의 액수 산출 방법, ③ 동법 제33조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업무에 관한 요금의 액수의 산정 방법, ④ 지정 법인 및 지정 법인과 재상품화 등의 계약 또는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 재상품화 등에 필요한 행위의 실시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책임과 함께 위탁 요금의 수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여 주무 대신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휴지’란 지정 법인이 기간을 정하여 재상품화 등 업무를 정지하는 것을 말하고, ‘폐지’란 기간을 정함이 없이 재상품화 등 업무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7. 계약의 체결 및 해제(제38조)

(제38조)

- ① 지정 법인은 재상품화 등 계약의 신청자가 재상품화 등 계약을 체결한 특정 제조업자 등인 경우에 있어서 그 자에 대해 지급기한을 넘었거나 또는 지급하지 않는 위탁요금이 있는 때에는 기타 주무 성령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상품화 등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지 못한다.
- ② 지정 법인은, 특정 제조업자 등이 해당 재상품화 등 모든 특정가정용 기기 재상품화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외 주무 성령으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상품화 계약을 해제하여서는 안 된다.

동조의 입법 취지는 지정 법인과 특정 제조업자 등과의 사이에 재상품화 등 계약의 체결 및 그 해제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을 정하고 있다. 지정 법인의 재상품화 등 업무 중 제33조 제1호에 게재된 업무는 특정 제조업자 등

이 스스로 재상품화 등을 행할 수 없는 경우에 재상품화 등 위탁 업체를 찾지 못할 때의 보완조치로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지정 법인과 특정 제조업자 등의 관계는 민사상 위탁계약이고, 그 계약의 체결에 대하여는 본래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고, 해제에 대해서는 민법에 의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특정 제조업자 등에 의한 재상품화 등의 계약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정 법인 측에서의 계약 체결의 거부,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8. 장부(제39조)

(제39조)

지정 법인은 주무 성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재상품화 등 업무에 관련하여 주무 성령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것을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조의 입법 취지는 지정 법인이 장부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고 이것을 보존하여야 함을 규정하는데 있다. 여기에서 ‘주무 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란 장부 폐쇄의 빈도, 장부의 보존기간 등을 주무 성령에서 정한다는 의미이다.

9. 보고 및 입회 검사(제40조)

(제40조)



- ① 주무 대신은 재상품화 등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 지정 법인에 대하여 재상품화 등 업무 보고 또는 자산의 상황에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또는 그 직원이 지정 법인의 사무소에 입회하여 재상품화 등 업무의 상황 또는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회검사의 권한은 범죄조사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동조의 입법 취지는 지정 법인에 대하여 주무 대신의 보고징수, 입회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지정 법인에 대하여 보고징수 및 입회 검사는 재상품화 등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즉 재상품화 등에 필요한 행위의 실시 상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지도 등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 실시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행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주무 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국가 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입회 검사는 사권의 중대한 제한이 된다는 점에서 그 권한 행사의 활용을 피하기 위하여 입회 검사를 행하는 직원은 항상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함으로써 그 신분을 증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입회 검사는 지속적으로 행정조치 또는 범죄조사(형사소송절차)를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 보고 징수 및 입회 검사는 지정 법인이 범죄 행위를 행할 경우에 행하여서는 안 되고, 재상품화 등 업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무 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되는 것이다.

(6) 감독 명령(제41조)

(제41조)

주무 대신은 이 장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 지정 법인에 대하여 재상품화 등 업무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동조의 입법 취지는 주무 대신이 지정 법인에 대하여 행하는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대하여 정하는 데 있다. 지정 법인이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 대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벌칙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주무 대신은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의 취소로 대처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감독상 필요한'이란 지정 법인이 행하는 재상품화 등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상품화 등의 비용이나 위탁요금의 수수 방법, 지정인수 장소의 설치 등 지정 법인의 사업 운영 전반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미한다.

(7) 지정의 취소 등(제42조)

(제42조)

- ① 주무 대신은 지정 법인이 다음의 각호의 어떤 것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하 이 조에 있어서 「지정」이라고 함)을 취소할 수 있다.
1. 재상품화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확실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지정에 관한 부정행위가 있는 때
 3. 이 장의 규정 또는 당해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또는 제35조 제1항의 인가를 받은 동항에 규정한 재상품화 등의 업무 규정에 의하지 않는 재상품화 등의 업무를 행하는 때
- ② 주무 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한 때는 그 취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동조의 입법 취지는 지정 법인이 재상품화 등 업무를 적정하고 확실하게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지정과 관련하여 부정의 행위가 있을 때, 제32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할 때 또는 재상품화 등 업무 규정에 따르지 않아 재상품화 등 업무를 행할 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 대신이 당해 지정 법인에 관련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명령'이라 함은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내리는 정령(政令), 성령(省令) 등 행정부가 정하는 법령

을 의미하고, '처분'이라 함은 동 법률에 의하여 주무 대신이 행한 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미한다.

제6장 잡칙

잡칙에서는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과 관련된 관리표(管理表)에 대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동법 제43조 내지 제47조), 그 외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동법 제48조 내지 제57조)을 정하고 있다.

제7장 벌칙

주무 대신이 내린 명령에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벌칙에 대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동법 제57조 내지 제62조).

제8장 부칙

동 법률의 시행 기일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고 재 종
(선문대 법대 교수)